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0. 3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10월 3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강희천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새로운 강좌 개설을 원하는 주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강좌별 특성에 따라 양질의 강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수강료 징수금액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나, 현실적으로 수강료 조례 개정 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자치회관의 강좌별 수강료를 상향할 때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수강료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.
-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규정 수강료를 현재 타 구 유사 강좌 및 프로그램 평균수강료 수준으로 상한액을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가. 수강료 징수기준 및 과목(강좌) 구분 변경내용

○ 수강료 징수기준(세분화된 개별기준 => 상한액 기준)

▶ 과목당 수강시간별 수강료 규정(2시간 이하~10시간 이하/10,000원 이하~35,000원 이하) => 월 수강료 상한액(35,000원)으로 규정

○ 과목(강좌) 구분 이원화 => 과목(강좌) 구분 일원화

▶ 일반강좌(취미, 교양강좌 등),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
=> 강좌프로그램(문화·취미·교양·생활체육 등)

○ 수강료 징수기준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1] 2. 수강료 나. 개별기준				[별표 1] 2. 수강료 가. 징수기준			
구분	기준(과목당 1주당 수강시간)	수강료(월)	비고	구분	단위	수강료 (상한액)	비고
일반강좌 (취미, 교양 강좌 등)	2시간 이하	10,000원 이하	실습재료 비등은 본인 부담	강좌프로그램 (문화취미·교양생활체육 등)	월 과목당	35,000원	실습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
	3시간 이하	12,000원 이하					
	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				
	7시간 이하	18,000원 이하					
	9시간 이하	20,000원 이하					
	10시간 이하	35,000원 이하					
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	5시간 미만	25,000원 이하					
	5시간 이상	35,000원 이하					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동 조례안은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및 프로그램(시간대별 규정) 수강료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로 규정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별 특성에 따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각 동 자치회관에서는 그 동안 새로 신설 운영 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

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2000. 10. 31.조례 제정이후 자치회관 강좌 및 프로그램별 수강료에 대한 월 수강료를 ‘자치회관 수강료 징수기준’으로 조례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자치회관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,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금이라도 강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탄력성 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됨.

-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에 저촉됨이 없고, 2014. 8. 28. ~ 9. 17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